

#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년월일: 1998. 12. 거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의 감면 및 경감으로, 외자도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와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

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 후 주식 등의 투자비율 미달, 소유주식의 한국인, 한국법인에 양도,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세회 13400-117(98.11.25)호 덧붙임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문 대비표 : 필요없음.

## 평창군세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제3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토세를 추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조례 제7장 제26조내지 제30조를 제7장 제27조내지 31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